

인천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523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인

피고 1. 주식회사 C

2. D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영

변론 종결 2024. 7. 25.

판결 선고 2024. 10.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에 2020. 4. 7.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 · 양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사이에 2020. 4. 7.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 · 양수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 2020. 2. 2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 · 양수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D은 피고 C에게, 피고 C는 E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미추홀구 F 일원 G공유수면매립 사업의 경과

1) E은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2018. 6. 29. 인천 미추홀구 F 일원 G 공유수면 52,339m²에 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매립면허(인천광역시 고시 H, 면허번호 인천광역시 I)를 받고, 2019. 12. 30. 위 매립면허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이하 승인을 받은 매립면허를 '이 사건 매립면허'라 한다), 이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매립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E은 2020. 1.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E이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7,402,852,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E, J,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피고 C,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2020. 2. 4. E이 피고 C에 이 사건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권리(이하 '이 사건 매립면허권'이라 한다)을 매도하되, M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60억 원을 J에 대여하고, E은 J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나머지 사업비는 E의 명의로 PF대출을 받고, 피고 C가 신탁사를 이 사건 매립면허권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사로 하여금 매립면허와 사업비를 관리하도록 하며, J과 N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책임준공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E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2020. 2. 4. 피고 C와 사이에, E이 피고 C에 이 사건 매립면허권을 35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매도인: E

매수인: 피고 C

제1조(용어의 정의)

'거래종결일'이라 함은 본 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거래종결의 서면통지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

'매매계약 관련 합의서'라 함은 본 계약상 매매대금의 상계, 해제시 주식양수도에 대하여 정하기 위하여 매수인, 매도인 및 대주 사이에 2020년 2월 4.일 체결한 매매계약 관련 합의서를 말한다.

'매매목적물'이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F 일원(G) 52,339m²(이하 '매립사업부지')의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권리(이하 '본건 공유수면매립면허권')를 말한다.

'본건 사업'이라 함은 매립사업부지에서 추진 중인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의미한다.

'사업약정서'라 함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로서 매도인, 차주 겸 시공사로서 J(이하 '시공사'), 대주로서 M(이하 '대주'), 매수인으로서 매수인, 채무인수인 또는 책임준공 보증인으로서 N 등 사이에 2020년 2월 4.일 체결되는 사업약정서를 의미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1)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삼백오십육억 원(₩35,600,000,000)으로 한다. 단, 매매목적물의 준공업지역(물류유통시설용지) 면적이 22,994m²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은 단위 면적(m²)당 금 1,548,229원 기준으로 감액된다.

(2) 매수인은 본조 제1항의 매매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계약금: 제5조의 계약금 지급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면통지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으로서 삼십오억육천만 원(₩3,560,000,000)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나. 중도금: 제5조의 계약금 지급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면통지하는 경우, 매수인은 중도금으로서 삼십오억육천만 원(₩3,560,000,000)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다. 잔금: 매수인은 거래종결일에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다.

제4조(매매목적물의 이전)

(1)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에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별지1 기재 필요서류 중에서

1.항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주무관청의 신고 수리를 포함한다)에 적극 협조한다.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에 별지1 기재 필요서류 중에서 2.항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가등기, 가압류, 압류, 임차권 및 기타 미납 제세공과금 등 매수인의 완전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부담을 해지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의 주무관청 신고가 수리되도록 한다.

제5조(계약금 지급의 선행조건)

본 계약 제3조 제2항 가.호의 계약금 및 나호의 중도금은 사업약정서상 대여금의 최초 인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매수인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지급된다.

가. 본건 사업의 실시계획상 매립지 내의 지방관리 도로가 폐쇄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승인되고, 해당 도면이 매수인에게 제출될 것

나. 매수인이 추진할 물류유통시설의 건축개요에 대하여 매도인, 시공사 및 매수인이 상호 합의할 것

다. 매도인이 추진하는 2단계 매립사업에 대하여 별지2 기재 양식의 확약서가 대주에게 제출될 것

라.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가 모두 이행될 것

제6조(거래종결의 선행조건)

(1)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매수인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본 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가. 제5조 나.호에 따라 합의된 물류유통시설의 건축개요 수준으로 건축 인허가가 완료되어야 한다.

나. 매도인이 거래종결일까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하였어야 한다.

다. 매도인이 진술 및 보증한 사항이 거래종결일 기준으로 중요한 면에서 모두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거래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거래종결이 되었음을 서면통지하며, 제3조 제2항 다.호의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3) 매수인이 본조 제2항의 거래 종결의 서면통지를 발송한 날(이하 '거래종결일')에 본 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거래가 종결되어 매매목적물은 매수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며,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피고 C는 인천광역시장에게 O로부터 이 사건 매립면허권을 양수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20. 2. 2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6)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2020. 3. 27.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탁자를 피고 C, 수탁자를 피고 D,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이하 위 각 은행을 합하여 '이 사건 은행들'이라 한다), 2순위 우선수익자를 J, 수익자를 피고 C, 채무자를 E, 신탁물건을 이 사건 사업으로 취득할 매립토지(이하 '이 사건 매립토지'라 한다)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7) 피고 D는 인천광역시장에게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매립면허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양수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20. 4. 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원고 A과 E의 관계

1) 원고 A과 E은 2001. 7.경 인천 남구 K 공유수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공사계약권(위임) 및 분양컨설팅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인천 남구 K 공유수면(L)

계약권 및 분양토지 평수: 공사평수 약 11,700평

분양평수 약 8,500평

1. 상기 지번 부동산 공사계약권 및 분양컨설팅에 있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서 인천광역시 명의로 공시하여 바다 매립 공사를 위임받은 법인을 '갑'이라 하고, 공사권 및 분양컨설팅을 맡은 법인 및 개인을 '을'이라 한다.
2. 을은 갑이 공시받은 매립지를 협의하에 공사하여 분양, 입금시키기로 한다.
3. 을은 공사 및 분양권에 대하여 광고 및 제반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4. 상기 부동산 표시의 공사대금 및 분양대금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5. 을의 공사 및 분양컨설팅 비용은 갑과 을이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6. 갑이 분양함에 있어서도 을과 협의하되 그에 대한 컨설팅 비용은 을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7. 갑과 을은 상호 신의, 성실 속에 서로 협력하여 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갑: E

을: 원고 A

2) 원고 A과 E은 2013. 4. 24. 인천 남구 K 공유수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 하고, 그 중 제7조를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부동산 공사계약권(위임) 및 분양컨설팅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인천 남구 K 공유수면(L)

계약권 및 분양토지 평수: 공사평수 약 11,700평

분양평수 약 8,500평

1. 상기 지번 부동산 매립공사 계약권 위임 및 분양대행계약에 있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서 인천광역시 명의로 공시하여, 위 바다 매립 공사(부동산 매립공사)를 위임받은 법인을 '갑'이라 하고, 위 부동산 매립공사 계약권 및 분양대행권을 수임받은 법인 및 개인을 '을'이라 하며, 위 갑과 을은 위 부동산 매립공사 계약권 및 분양대행권 수임계약 관련하여서 을은 전속적, 독점적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2. 을은 갑이 위 공시받은 매립지를 합의하에 매립공사를 하여, 위와 같이 매립된 부동산을 을은 갑과 합의된 분양가격으로 분양 후 갑과 합의된 금액(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갑에게 입금시키기로 한다.
3. 을은 위 매립지 공사계약 및 위 매립지 분양에 대한 분양광고 및 위 분양광고 등에 수반된 제반사항을 책임지기로 하되, 위 분양가격, 수수료 등 공제금액, 분양대금 입금방법 등에 관하여는 갑과 을 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4. 상기 부동산 표시의 공사대금 및 분양대금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지불하기로 한다.
5. 을의 공사계약권 및 분양대행권 수임(수수료) 비용은 갑과 을이 추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6. 위 부동산 매립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갑도 위 매립지를 분양할 수 있으나, 위 분양을 함에 있어서 을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위 갑의 위 부동산 매립지 분양은 갑이 분양계약한 것이지만, 위 갑의 분양계약과 을이 분양한 것으로 간주하여, 갑의 위 분양계약분에 대한 컨설팅 비용은 을의 분양컨설팅 수수료로 하기로 합의한다.
7. 갑과 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 계약내용을 양지하고 합의하며, 위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서로 지키기로 하며, 위 계약내용을 어긴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벌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위약벌금은 위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금 또는 분양대금의 10%로 하기로 합의하고, 위 위약벌금에 대하여는 법정에서 서로 인락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후일 위 계약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그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갑: E

을: 원고 A

다. 원고 B와 E의 관계

- 1) 원고 B는 2011. 10. 4.부터 2017. 3. 29.까지 E의 대표이사인 V에게 1억 9,740만 원을, 2014. 5. 30.부터 2019. 10. 30.까지 E에 5억 1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B에게, V는 2013. 2. 19.부터 2018. 10. 10.까지 합계 1억 6,385만 원을, E은 2014. 7. 31.부터 2020. 1. 22.까지 합계 5억 1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2) 원고 B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27399호로 위 금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4. 6. "E은 원고 B에게 39,292,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2023. 5.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24. 3. 15.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6, 12, 1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 9 내지 11, 16, 17, 20,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

가. 원고 A은 E과 사이에 원고 A이 공유수면 매립 공사권 및 분양대행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기로 하는 제1차,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2차 계약서 작성시 E이 위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위약벌 조항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데, E이 2015.경과 2016.경 위 계약을 위반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위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 A은 위 위약벌 조항에 관한 약정에 따라 E에 대하여 17억 원(= 분양평수 8,500평 × 평당 200만 원 × 0.1)의 위약벌 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고 A은 E에게 2001. 4. 27. 1,000만 원, 2001. 7. 7. 2,100만 원, 2001. 7. 12. 3,000만 원, 2001. 5. 28. 500만 원, 2001. 6. 18. 1,000만 원, 2001. 10. 20. 2,0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B는 E에 대하여 관련 판결에 따라 39,292,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2023. 5.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그런데 E은 피고 C와 사이에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는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매립면허권을 다시 양도 또는 신탁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

라. 따라서 E과 피고 C가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 및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피고 C에게, 피고 C는 E에게 각각 이 사건 매립면허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적법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 사이에 2020. 4. 7. 체결된 이 사건 매립면허권의 양도 또는 신탁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원고들이 수익자인 피고 C와 전득자인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가) 이 사건 양도계약은 2020. 2. 4. 체결되었고, 인천광역시장이 2021. 11. 22. 인천광역시 고시 W로 이 사건 매립면허 취득자가 E에서 피고 D으로 변경되었음을 고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고시일 무렵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 B는 2021. 9. 6. 수원지방법원 2021카단505245호로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피고 D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여 2021. 9. 24.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22. 3. 31. 위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여 준 사실이 있으므로, 2021. 9. 6. 또는 2021. 9. 24. 무렵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 A 역시 2021. 9. 6. 또는 2021. 9. 24. 무렵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갑 제5, 14, 2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B가 E이 여전히 이 사건 매립면허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점, 원고 B가 2022. 4. 5. 인천지방법원 2022카단475호로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22. 4. 25.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대한민국이 2022. 5. 25. 위 법원에 'E이 2020. 2. 20. 피고 C에 이 사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C는 2020. 4. 7. 피고 D에 이 사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B가 2023. 2. 20.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그 무렵 위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아본 점에 의하면, 원고 B는 2023. 2. 20.경 이 사건 매립면허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1년 내인 2023.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인 2021. 9. 6. 또는 2021. 9. 24. 무렵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약벌 채권의 존부 가) 관련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약벌 약정의 본질적인 사항은 채무불이행의 내용과 위약금의 액수인데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위약벌의 액수에 관하여 '위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금 또는 분양대금의 10%로 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 A과 E은 제2차 계약서 작성시 위 이익금 또는 분양대금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립된 부동산을 원고 A은 E과 합의된 분양가격으로 분양 후 E과 합의된 금액(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E에 입금시키기로 한다', '분양가격, 수수료 등 공제금액, 분양대금 입금 방법 등에 관하여는 E과 원고 A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상기 부동산 표시의 공사대금 및 분양대금은 E과 원고 A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지불하기로

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분양대금 또는 이익금에 관하여 추후 합의할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과 E 사이에 위약벌 약정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약벌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이 E에 대하여 위약벌 약정에 따른 위약벌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대여금채권의 존부 가) 원고 A이 E에게 2001. 4. 27. 1,000만 원, 2001. 7. 7. 2,100만 원, 2001. 7. 12. 3,0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은 E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A이 E에게 2001. 5. 28. 500만 원, 2001. 6. 18. 1,000만 원, 2001. 10. 20.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 A의 주장에 대하여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에서 인정된 각 대여금 채권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인인 E에 대한 원고 A의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원고 A은 위 각 대여일부터 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각 해당 대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 따라서 원고 A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B가 2011. 10. 4.부터 2017. 3. 29.까지 E의 대표이사인 V에게 1억 9,740만 원을, 2014. 5. 30.부터 2019. 10. 30.까지 E에 5억 1천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 B가 E을 상대로 위 금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 B에게

39,292,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2023. 5.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관련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 B의 위 대여일 이후에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의 관련 판결에 따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2 내지 15,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매립면허권이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이를 피고 C에 양도한 사실, 피고 C는 위 계약 직전인 2020. 1. 28. M에 의하여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된 사실, 위 계약 당시 E, 피고 C, M는 E의 피고 C에 대한 위 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 채권, 피고 C의 M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금 채권, M의 E에 대한 이 사건 사업약정상 J의 60억 원의 대여원리금 채무 연대보증에 따른 연대보증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되, 이 사건 양도계약 제5조의 계약금 지급의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M가 E과 피고 C에 위 상계합의가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며 그 서면통지가 발송된 날에 위 상계합의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그 후 위 선행조건이 충족되어 M가 2022. 3. 29. E과 피고 C에게 E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양도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 71억 2,000만 원 중 60억 원 채권, 피고 C의 M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금 중 60억 원 채권, M의 E에 대한 6,096,575,342원의 연대보증채권 중 60억 원 채권이 각 상계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피고 C가 E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71억 2,000만 원 중 60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남은 11억 2,000만 원은 피고 C가 남인천세무서장의 압류 및 추심요청에 따라 E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8,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E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2019. 6.경 이 사건 사업 총 비용으로 약 30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PF대출 신청을 준비하면서 주식회사 X과 사이에 이 사건 매립면허를 260억 원(이 사건 매립토지를 평당 500만

원으로 계산한 값이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2) E은 2020. 1.경 J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그 무렵 J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게 된 M가 E에 이 사건 매립토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폐도되는 것 등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매립면허를 양도할 것을 제안하여, E과 M는 E이 이 사건 매립면허를 356억 원(이 사건 매립토지를 평당 약 510만 원으로 계산한 값이다)에 피고 C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약정과 양도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3) E은 이 사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 시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실제로 M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대여한 60억 원과 E이 이 사건 은행들로부터 받은 PF대출금 190억 원이 사업비로 사용되어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고, 현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4) E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상계되거나 세금으로 변제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채권 이외에도 잔금 284억 8,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 B에 대한 위 채무를 포함하여 E의 채무가 위 잔금 채권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양희

판사김연수

판사이순공

별지

1) 이 날짜는 해당 계약의 체결일이 아니라 해당 계약에 따른 매립면허 양수신고가 수리된 날이며,

청구취지 2.항 기재 날짜도 마찬가지이다.

2) '인천 남구 K 공유수면(L)'으로 칭하기도 한다.